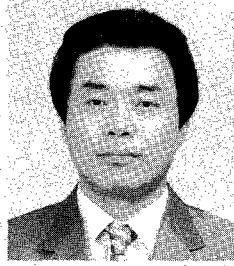


□ 시책/닭 질병근절을 위한 정부의 방역시책 및 추진방향

정부의 닭 방역시책 및 추진방향



김 창 섭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 수의사무관

1. 기본방향

닭을 포함한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과 농장간 차단방역은 농가와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농가 개별단위로 할 수 있는 닭도축장 출하 닭의 혈청검사, 종계장 검진 및 살처분, 이동간의 차단방역, 예방약 개발·보급, 우수종계장의 인증, 수출입 검역을 실시하되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닭 질병중 뉴캣슬병에 대하여는 방역관리 특성상 지난 1997년부터 부화장을 대상으로 분무예방약을 100%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농장방역관리

① 뉴캣슬병

- 발생동향 : ('97) 29건, ('98) 14, ('99. 7) 15
- 예방약 지원('99) : 300백만수분, 15억원
- 예방접종 지원대상 : 부화장의 초생추
※ '87까지 소규모 농가 예방약 지원→ 자율방역 전환 → '97부터 부화장 대상 분무예방접종 실시(2차는 농장 접종)

(문제점)

- 자동분무기가 없는 부화장의 경우 분무 잘못으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예방약 사용 기피 또는 변칙사용
- 종계의 마이코플라즈마 등 감염시 접종 스트레스 가중
- 국내제품과 수입제품간의 약효 겸증에 대한 자료 미흡

② 추백리

- 발생동향 : ('97) 19건, ('98) 10, ('99. 7) 6
- 검진('99) : 129천수분, 23백만원
- 추백리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종계장의 종계에 대한 검진실시

※ 1차 검진은 농장주가 실시하고 2차 확인검사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실시, 확인검사 결과 1% 미만 양성계군에 대하여는 살처분보상금 지급요령에 의거 1차 축주가 살처분한 종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2년치의 확인검사 결과 양성발생이 없는 종계장에 대하여는 확인검사를 생략하고 가축방역관이 농장주의 검사과정을 입회검사로 갈음.

(문제점)

- 신고되지 아니한 종계장의 검진누락으로 종계위생관리 문제 상존
- 축주의 1차 검사 소홀 및 양성종계에 대한 살처분(자체 도태)저조, 양성계 발생 은폐
- 과감한 살처분 정책 도입이 필요하나 보상금 재원 부족

-양계농가의 초생추 구입시 검진결과 확인 소홀 등

③ 가금인플루엔자

- 발생동향 : ('96) 5건, ('98) - , ('99. 7) 13
- 종계장 중심 혈청검사 실시 : ('98) 5,175수 ('99) 10천수

• '98 검사결과 11농장 11계군이 항체 양성이 나타났으나 확진을 위한 바이러스 분리검사에서는 음성

-'98.11부터 “가금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에 의거 방역관리

※ 고병원성(OIE List A/ H5,H7), 약병원성(H9), 비병원성(기타H형)으로 분류하여 고병원



성과 약병원성에 대하여만 방역관리, 국내 발생(화성, 정읍, 영천, 포천, 김천)은 약병원성으로 '98.11 이후 발생농장은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하지 않고 김염계군 도태, 이동제한, 출입통제 및 인근농장 확대검사 등을 실시

(문제점)

- 유효 예방약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으로 차단방역외에 별도 방역대책이 없음
- 미국, 호주의 발생사례로 볼 때 약병원성도 여건에 따라 고병원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과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예찰이 필요함.

-발생 초기 증상이 뉴캐슬병 또는 쇽시듐 등 타질병으로 오진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어려움

④ 가금티푸스

- 발생동향 : ('97) 22건, ('98) 39, ('99. 8) 34
- '9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발생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유효한 예방약이 보급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차단방역 위주로 방역관리 교육·홍보

- 보균계(양성계) 검색도태, 종계장 올인 올아웃 시스템도입, 오염기구 및 분변의 소독실시

• 내병성이 강한 백색란 품종으로 전환 등
-현재 생균예방약의 수입을 위한 임상시험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험결과에 따라 실용계에 한한 제한적인 사용방안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

(문제점)

-오염농장 전계군 도태후 재입식 방법이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워 농장 재감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항생제 치료에 효과가 없으며, 국내 개발 사균예방약의 효력이 낮고 부작용(산란율 저하, 성장장애 등)으로 농가 사용기피

-연중 지속적인 발생, 야외감염시 61% 정도의 폐사율, 질병원인체나 전파양상이 추백리와 동일(난계대 전파, 수평전파)하여 효과적인 방역이 어려움

⑤ 기타질병(뇌척수염, 전염성비기관염, 마이코플라즈마병, 마렉병, 전염성기관지염, 계두, 전염성F낭병, 산란저하증 등)

-농장 자율방역, 예방약 개발·보급
-종계장을 중심으로 가축위생시험소를 통한 정기검사 실시

2) 차단방역 관리

- 뉴캣슬병 예방접종 강제 실시
-부화장을 대상으로 분무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약 지원
-돼지콜레라 및 뉴캣슬병 예방접종실시명령(농림부 고시)에 의거 예방접종을 1차는 부화장에서 2차는 닭 사육시설에서 실시토록 하고

미접종 농가에 대하여는 서류검사와 혈청검사를 통해 과태료 처분(부화장은 300만원, 양계농장은 10천수 이상은 200~300만원, 10천수 미만은 150~200만원)

○ 가축수송차량 등 세척·소독 실시

-'97부터 닭도축장에 대하여 수송차량과 어리장(닭 수송용기)의 세척·소독시설비 지원(개소당 280백만원 용자)

• '97~'98 설치 : 12개소(전체 닭 도축장수 60개소)

-'99.1부터 소독시설 미설치 또는 가동을 하지 않는 닭 도축장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경고 ~50만원)

(문제점)

-닭 어리장차로 인한 뉴캣슬병, 가금티푸스 등 질병의 농장간 전파요인을 차단하는 방역효과가 가시화됨에도 불구하고 영세도축장들이 시설비 부담으로 투자를 기피

• '99사업비 30개소, 30억원 불용 예상

※ 어리장을 교체한 도축장의 경우 금년 폭염시 물세척후 선풍기 가동으로 계류중인 닭의 폐사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킨 사례도 있음.

○ 가금 등 동물의 균독주 관리

-대학 및 민간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수입하거나 밀반입되는 균독주로 인한 가축방역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물의 균독주관리령”을 농림부 고시로 제정('98.12.5)운영.

-시험연구·동물용예방약 및 진단액류의 생산·병성감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병원체로서 바이러스·세균·진균·기생충 등(닭의 경우 추백리, 뉴캣슬병, 가금인푸루엔자, 감보로 등)에 대하여는 수입 또는 수의과학검역원 보관중인 균독주의 분양시 농림부장관의 허가·승인

을 받도록 하고 검역원장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

3) 수출입 검역관리

- 초생추 및 종란

-수입위생조건 : 수출국내 가금인푸루엔자는 3년, 뉴캣슬병은 수출농장 반경 10km 1년간 비발생조건 및 수출전 뉴캣슬병 등 14종 전염병 검사실시

-국내 도착후 역학조사, 임상검사 및 추백리 가금티푸스, 살모넬라감염증 등 정밀검사 실시

-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 수출국내 가금인푸루엔자는 2년, 뉴캣슬병은 수출농장 반경 10km 1년간 비발생, 가금콜레라 등 10개 질병은 수출농장 1년간 비발생 조건

-국내 도착후 현물검사, 일반세균 및 병원성 미생물검사(7종) 및 잔류물질(37종) 검사

4) 농가 방역지원

- 공동방역사업단 운영

-공동방역사업실시단운영요령(농림부 훈령)
제정 · 운영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축사소독 등 가축방역을 지역단위로 공동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주축으로 공동방역사업실시단을 구성, 운영하게 함으로써 농가의 참여확대와 책임을 부여하는 등 가축방역의 효율성 제고

-'97부터 시군의 축종별 사업단 개소당 방역차량, 대형냉장고, 소독장비 등 35백만원 보조(15백만원 자담)

• '99. 7현재 총 106개 사업단중 닭은 12개소 설치

-사업단 대부분이 사업비의 부족과 사업단에 참여하는 농가의 비협조로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99년도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 공동으로 방역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내년부터는 이를 시행할 계획임

• 국비로 지원하는 공수의 수당도 내년부터는 예방접종 시술비로 전환하여 사업단 소속 수의사에 대하여 사업실적에 따라 시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혈청조사사업

-검사대상 : 혈청검사를 요청한 농가의 닭, 종계장 또는 닭도축장에 출하된 종계를 위주로 실시

-대상질병 및 '99물량 : 뉴캣슬병, 산란저하증, 감보로, 전염성기관지염, 마이코플라즈마(5종)/ 58천수, 250천건(국비341백만원)

-가축위생시험소의 검사결과를 농가에 통보, 농가로 하여금 예방접종 등 적정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위생 · 방역관리 우수 종계장 인증

-위생 및 방역관리가 우수한 종계사육농장의 인증요령 및 등급기준을 정하여 양계농가가 우수한 실용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96년도에 "위생 · 방역관리우수종계장인증요령"을 고시로 제정 운영.

-검사대상 전염병(추백리, 가금티푸스, 만성호흡기병, 전염성 활막염)이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상 발생이 없는 조건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수의과학검역원, 농진청 축산기술연구소의 검증을 거쳐 양계협회장이 인증

–'99현재 5개 종계장이 신청, 2개소가 인증을 받음.

3. 금후 추진방향

닭 질병의 방역상황은 정부와 양계단체의 각적인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금년들어 백세미에서 뉴캣슬병의 발생이 증가되고 가금티푸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저혈당증까지 확인되는 등 양계농가의 닭질병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와 축산단체가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반하여 양계농가들은 정부가 양계부분의 방역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8월에 대한양계협회가 주축이 되어 학계, 관계, 양계전문가들로 위생·방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은 양계분야 방역정책 수립과 추진에 매우 도움이 되리라 예상한다.

정부에서는 상기 위원회의 역할과 의견에 비중을 두고 당면한 현안사항을 하나씩 해결하여 양계농가의 닭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다만, 서두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농가 개별적인 방역은 정부의 지원에 의한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농가별로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추진할 사항이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1) 뉴캣슬병 근절대책 추진

- 부화장 분무예방접종 이행상태 점검 강화
- 무등록 부화장의 신고 유도 및 농가의 초

생추 구입시 예방접종 여부확인 철저

– 부화장 자동분무기 지원 검토 및 종계장 관리강화

○ 도축장 출하 닭에 대한 혈청검사 실시, 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적용 철저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과 같은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 삼계탕 등 양계산물의 수출 확대 유도

2) 추백리 등 근절을 위한 종계장 위생관리 철저

○ 관내 종계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 종계장위생관리요령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 우수종계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추진

○ 양성계 자가도태 활성화를 위한 살처분 보상재원의 확보

3) 혈청조사 사업 확대 및 결과활용 강화

○ 닭 도축장 혈청검사 결과 활용의 극대화

– 전문지를 통한 혈청검사 결과의 공표

– 출하농장 허위기재 닭도축장에 대한 행정처분 철저

○ 가금인플루엔자 혈청검사 물량의 확대

– 종계장 및 과거 발생지역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검사

4) 차단방역 등 강화

○ 닭 도축장 수송차량 및 용기 세척·소독 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 점검 강화

– 닭수송차량의 농장 출입시 농가로 하여금 소독증명서 확인사항 이행에 철저토록 홍보·교육 실시

- 소독시설 미설치 도축장은 축산물가공처리 법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소독 시설은 설치하였으나 운영을 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조치를 구분하여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계획.

- 일회용 난좌를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난좌로 인한 병원체 오염, 확산요인을 차단

5) 가금티푸스 방역관리

- 수입 생독예방약에 대한 임상시험 조기 완료
-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실용 산란계에 국한하여 적용
- 종계의 사용금지를 위한 수급관리 통제방안과 계란내 생균의 잔류로 인한 소비문제 보완대책 강구
- 농장간 차단방역 홍보강화 및 내병성이

강한 품종의 보급

6) 수입 검역강화

- 가금육에 대한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신규 미생물·중금속 등에 대한 정밀검사 확대
- 수입검역이 종료된 초생추의 사후관리 체계 강화

7) 닭도축장 HACCP 적용 확대 등

- 2000. 7~2003. 7까지 닭 도축장 규모별로 년차적 HACCP 의무적용
-'99 HACCP 시설자금지원 : 2개소, 7억원 용자
- 2000년부터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 (개소당 7백만원 보조)
○ 계열화 업체를 우선으로 닭도축과정에서 생체·해체검사 결과(질병 및 관리 요인)를 계열농가에 통보하여 농가가 적정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양계**

양계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자

양계산업은 경제난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생산기반이 약화되었고, 자금난으로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양계산물의 생산비는 급상승하고 있다. 생산성이 저하되면 국제경쟁력이 낮아져 우리의 양계산업은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각자의 위치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